

평창군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. 21 .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8. 12 . 29 .
- 다. 상정일자 : 1998. 12. 29. 제62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 
제2차 본회의

### 2. 제안이유

- 현행 상수도 요금은 톤당 478.4원으로 총괄 생 삽 원 가 1,050.4원에 훨씬 미달되어 매년 10억 9천여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으며
- 최근 우리 지역에서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고 봉평 일대가 문화관광부로 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등 상수도 시설의 확장이 시급한 반면, 재원 악화로 인하여 대부분 재원을 기채로 충당한 결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에 따라,
-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수용가의 물가부담과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평균 40%인상
- 나. 물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중에게 구간 10 ~ 20m<sup>3</sup>(기본구간)과 11 ~ 20구간까지의 누진율을 개선하여 절수유도

- 다. IMF로 인한 지역상권 부양과 경기회복을 위해 영업용의 인상분을 상대적으로 낮추고, 소비성향이 짙은 유통2종의 인상분을 상대적으로 높임.
- 라. 감면 근거가 미약하였던 모범음식점, 양로원, 경로당, 노인회관 영·유아원, 유치원등 공공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
- 마. 요금부과 실적이 전무했던 전용공업용의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

#### 4. 검토 의견

가. 먼저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,

-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업자인 경우는 수돗물의 요금,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.
- 나. 최근 신규 상수도시설에 대한 대부분 투자는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기채에 의존하는 현실과, 요금징수액 대비 생산원가가 매우 높은 실정을 감안할 때 인상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,
- 다. 최근 IMF로 인한 경기위축과 가계경제 악화로 인하여 정부가 물가인상 지수를 한자리로 고수하려 하고 있는점, 공공기관이 '99년도 공공요금을 누구나 할 것없이 대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이로 인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